

[별표 2]

간이신고 배제대상물품

1. 별표 1에 해당하는 물품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2.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13조제1항제1호, 제3호, 제6호, 제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합의세율 적용신청물품, 원산지 증명서 제출대상물품, 담배소비세 납세담보확인서 제출대상물품)
3. 할당.양허관세율의 적용을 신청한 물품 중 세율추천이 필요한 물품
4. 법 제83조에 따른 용도세율의 적용을 신청한 물품 중 사후관리 대상물품
5.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6. 법 제250조에 따라 신고취하 또는 신고각하된 후 다시 수입신고하는 물품
7. 해체.절단 또는 손상.변질 등에 의해 물품의 성상이 변한 물품
8.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적용대상 물품
9.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이 부정확하여 세관장이 간이신고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10.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물품
11. 법 제240조의2에 따른 유통이력 신고대상 물품